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5년 1월 10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3. 제안이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사업)**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출연목적

- 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 및 유관기관 연계 투자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출연대상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대 표 : 정희권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 규 모 : 10본부(10실, 17팀), 1부(1팀), 현원 총 162명
- 주된사업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 출연금액 : 900백만원(도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도비)	2025년 요구액(도비)	재원별(2025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	'25. 3. ~'26. 3.	360	900	3,600	1,800	900	900

※ 국비,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지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5.기준보조율)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23,720	7,200	4,800	2,900	2,900	2,320	3,600	'25.부터 지방비 매칭 상향 (국고의 100% 매칭)
국 비(50%)	17,400	6,000	4,000	2,000	2,000	1,600	1,800	
도 비(25%)	3,160	600	400	450	450	360	900	
시군비(25%)	3,160	600	400	450	450	360	900	

○ 사업내용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R&BD), 강소특구 간 연계 협력 지원, 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 기대효과

-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 특구 내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기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성과 창출
- R&D→사업화→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출배경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202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나. 추진경과

- (2018. 12.) 충북 청주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도-청주시-충북대)
- (2019. 06.) 충북 청주 강소특구 지정(과기부)
- (2019. 11.) 충북 청주 강소특구 육성 협의체 발대식
- (2020. 03.) 충북 청주 강소특구 육성사업(1단계) 추진('20.~'24.)
- (2023. 02.) 충북 청주 강소특구 면적 확대
(당초 2,203,151.9㎡ → 변경 2,855,443.2㎡ / 증* 652,291.3㎡)
*오창과학산업단지 사업화 지구 면적 증가
- (2024. 05.) 강소특구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 실시(과기부)
- (2024. 06.)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발표 → 후속 특화발전(2단계) 지원 타당
- (2025. 03.) 충북 청주 강소특구 육성사업(2단계) 추진('25.~'29.)

다. 종합의견

- 2019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을 포함한 6개 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현재 총 14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자체 협약을 통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9) 청주, 안산, 진주, 창원, 포항, 김해 / ('20) 구미, 울산(울주), 군산, 나주, 서울(홍릉), 천안(아산) / ('22) 인천(서구), 춘천

1)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 소규모·고밀도 R&D특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 공간으로 구성하여, 총면적 2.85㎢('23년, 2.2㎢→2.85㎢ 면적확장)로 스마트IT부품·시스템 분야를 특화하여 강소특구를 육성 중임
- 강소특구 1단계('20.~'24.) 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및 2단계('25.~'29.) 특화발전 추진계획 평가를 통해 후속 특화발전 지원이 확정*('24.6월)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해 본 출연을 통한 국비 대응 지방비 적시 매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29호(2024.6.11.)
- 아울러, 2025년도부터 총 사업비 대비 50%, 국고 대비 100%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전년 예산(3억 6,000만원) 대비 5억 4,000만원(150%) 증액된 9억원(도비)을 2025년도에 출연 예정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호(2024.4.23.)
- 본 출연은 특구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이전→사업화→기업성장’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육성 및 충북 경제 발전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비중이 총 사업비의 50%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실적 등 향후 업무성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참고 1

'25년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구성(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수행주체	예 산	세부내용
합 계			3,600	
간 접 비			(지)100	지방비 수탁에 따른 특구재단 간접비
직 접 비			3,500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
공통수단 지원	소 계		950	
	기술이전 R&BD	특구재단	400	· 기술이전R&BD(200×2개) 400 - 기술이전 기업 및 연구소기업 대상, 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협력 Value-up R&BD	특구재단	500	· 협력 Value-up R&BD(100×5개) 500 - 2개이상 특구 내 기업이 협력한 기술이전 기업 및 연구소 기업 대상, 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이노테크 플러스	특구재단	50	· 강소특구 연계협력 지원 50 - 2개이상 특구간 연계프로그램(사업화 기획 등) 지원 등
특화수단 지원	소 계		2,550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기술핵심 기관 (충북대)	850	· 연구소 기업 발굴 및 육성 140 - 연구소 기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분기별 4건 x 10 = 40 - 연구소 기업 육성(R&BD전략 수립 및 지원사업 연계) ⇒ 10개 社(기존 연구소 기업 포함) x 10 = 100 ·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 전략 수립 지원 110 - 우수 연구자 발굴 및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6인 x 10 = 60 - 우수 기술 발굴 ⇒ 1건 x 50 = 50 · 기술설명회 개최 및 기술 마케팅 운영 100 - 분야별 기술설명회 개최 ⇒ 분기별 4회 x 15 = 60 - 특화분야 기술 및 소액기술 마케팅 운영 ⇒ 1회 x 40 = 40 · 교육, 아이템 검증, 기술 멘토링 및 제품화 지원 200 - 교육 및 아이템 검증 ⇒ 4회 x 20 = 80 - 기술멘토링 및 제품화지원 ⇒ 10개 社 x 12 = 120 · 연합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외부 경진대회 참가 120 - 창업경진대회 개최 ⇒ 2회 x 30 = 60 - 외부경진대회 참가 ⇒ 2회 x 30 = 60 · IR 데모데이 개최 및 IR 멘토링 100 - IR 데모데이 및 멘토링 ⇒ 20개 社 x 5 = 100 · 글로벌 IR 대회 참가 80 - 글로벌 IR 대회 참가 ⇒ 4개 社 x 20 = 80
	이노테크 기업 육성	기술핵심 기관 (충북대)	(지)1,700	· 대중소 기업 연계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500 - 대중소 기업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 4건 x 80 = 320 - 혁신기업 발굴 및 비즈니스 매칭 ⇒ 8건 x 10 = 80 - 지·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운영 ⇒ 10건 x 10 = 100 · 글로벌 진출 기술사업화 우수기업 육성 200 - 글로벌 진출 실증화 지원 ⇒ 3건 x 20 = 60

구 분	수행주체	예 산	세부내용
			- 글로벌 진출 사업화 지원 ⇒ 7건 x 20 = 140 • 특구 내 강소기업 집중 육성 900 - 전주기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10건 x 50 = 500 - 글로벌 진출 네트워크(전시회, 포럼 등) 지원 ⇒ 3건 x 50 = 150 - 연구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운영 ⇒ 5건 x 50 = 250 • 특화분야 연구 협의회 구성 및 지원 100 * 혁신네트워크 : 연구회, 혁신기관 협의체, 기업생태계 협의체 * 특화분야 : 이차전지, 양자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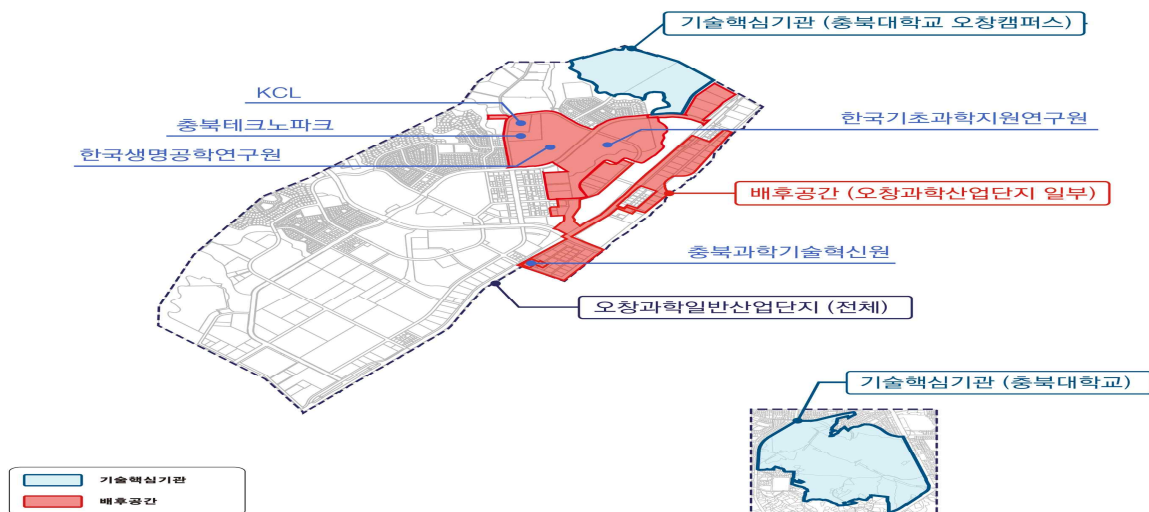
참고 2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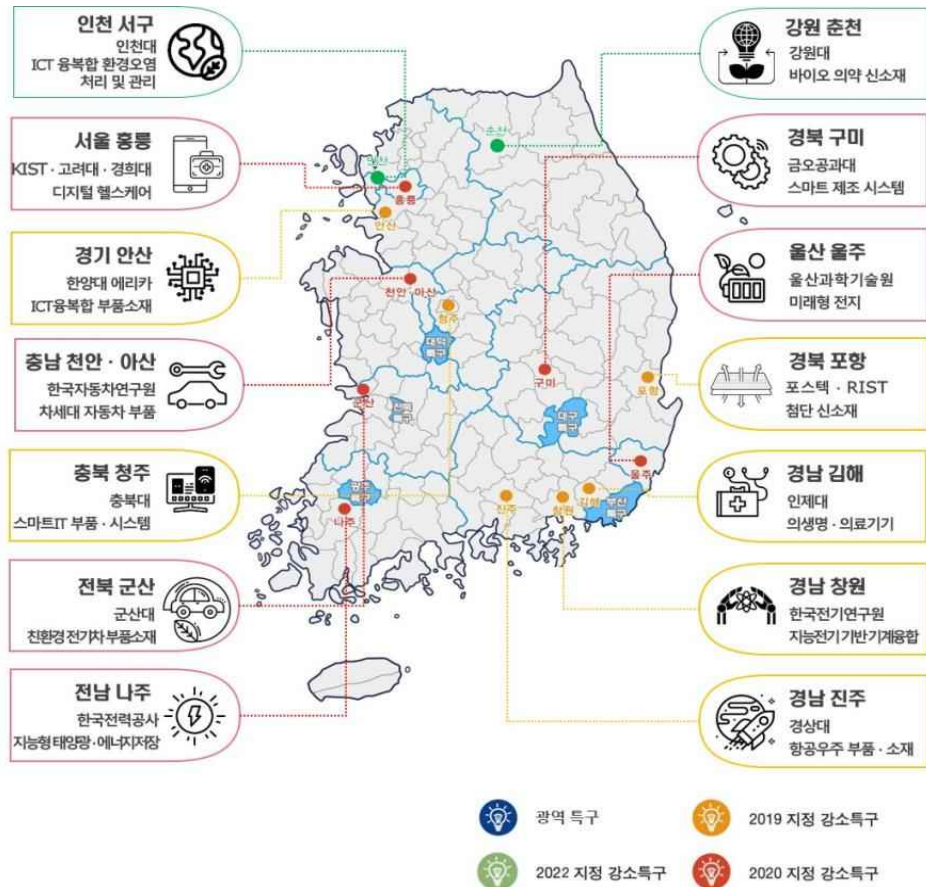
- (특화분야)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
- (위 치) 충북대 본교 및 오창캠퍼스, 오창과학산단 일부
- (사업기간) 1단계 2020 ~ 2024년(5년) *특구 선정 : '19. 6.
2단계 2025 ~ 2029년(5년) *2단계 평가 적정 : '24. 6.
- (사업예산) 237.2억원(국174, 지63.2) *25년 36억원(국18, 도9, 청주시9)
- (면 적) 2.85km²(기술핵심기관 1.41km², 배후공간 1.44km²)
※ 지정 당시 : 2.2km²('19.6.) → 면적 확장 : 2.85km²('23.2. / 배후공간 0.65km² ↑)
- (관리권자/관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산·학·연 인프라) 대학 1개, 정부출연연 2개, 혁신기관 5개, 기업 254개
 - 기술핵심기관(대학) : 충북대
 - 정부출연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기타혁신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 기업수 : 총 254개 기업 / 특화기업 126개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 (지정혜택)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
 - R&BD지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특구 당 연 18억원 정도 국비)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

□ 위치도 및 지형도면



참고 3

전국 강소특구 지정현황



지정시기	지역(기술핵심기관)	면적	입주현황(개)	특화분야
'19년 지정 ('19.6.)	①안산(한양대 에리카)	1.73km ²	기업(312), 공공연(3), 대학(1)	ICT융복합 부품소재
	②김해(인제대)	1.13km ²	기업(83), 공공연(1), 대학(1)	의생명 · 의료기기
	③진주(경상대)	2.17km ²	기업(247), 공공연(2), 대학(1)	항공우주 부품 · 소재
	④창원(한국전기연구원)	0.65km ²	기업(20), 공공연(1)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⑤포항(포스텍, RIST)	2.72km ²	기업(193), 공공연(8), 대학(1)	첨단 신소재
	⑥청주(충북대)	2.85km ²	기업(254), 공공연(7), 대학(1)	스마트IT 부품 · 시스템
'20년 지정 ('20.8.)	⑦구미(금오공과대)	2.57km ²	기업(303), 공공연(1), 대학(1)	스마트 제조 시스템
	⑧서울(홍릉) (KIST, 고려대, 경희대)	1.38km ²	기업(276), 공공연(1), 대학(2)	디지털 헬스케어
	⑨울산(울주)(UNIST)	3.01km ²	기업(142), 대학(1)	미래형 전지
	⑩나주(한국전력공사)	1.69km ²	기업(195), 공공연(2)	지능형 태양광·에너지 저장
	⑪군산(군산대)	2.70km ²	기업(127), 공공연(4), 대학(1)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⑫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1.32km ²	기업(102), 공공연(1)	차세대 자동차 부품
'22년 지정 ('22.6.)	⑬춘천(강원대)	1.86km ²	기업(58), 공공연(4), 대학(1)	바이오 의약 신소재
	⑭인천(서구)(인천대)	2.22km ²	기업(124), 공공연(4), 대학(1)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 및 특화발전 추진계획 관련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시 도둑의 위험을
함께 잘라 주십시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 알림 및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강소특구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나.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28('24.4.23., 제21회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결과 보고)

3.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5년이 도래한 6개 특구의 그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장소 : 2024.5.3.(금) 13:00 ~ 17:30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노폴리스룸(2층)

나. 평가 대상 : '19년 지정 강소특구'

* 경남 김해·진주·창원,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다. 평가 방법 : 발표 평가

라. 제출 대상 자료 :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및 증빙자료

마.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바. 제출 기한 : 2024.4.30.(화)

붙임 1.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계획(안) 1부.

2. 강소특구 종합평가 세부일정 1부. 끝.

강소특구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평가 실시계획(안)

202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수신자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한양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 김해시장, 대구시청, 서울특별시청, 인천대학교총장, 영남국립대학교총장, 한국전기연구원총장,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청, 강원도청, 고려대학교총장,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청, 충북대학교총장,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지역과학기술 전결 2024. 4. 23.

이남현 서우근 정꽃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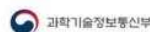
협조자

시행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 (2024. 4. 23.) 접수 과학기술정책과-3040 (2024. 4. 23.)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어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749 팩스번호 061-202-6027 / tolate11@korea.kr / 비공개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다시 도약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되-

I 개요

□ 평가의 목적 및 근거

- (목적) 강소특구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후속 특화 발전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
- 지자체(광역시도)가 1단계 기반 조성 성과 및 2단계 특화발전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화발전 단계 연속 지원불가
- ※ 단,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차년도 특화발전 사업(5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참고 : 1차 적정성 재검토 결과 요약>

- 1차 사업계획 작성성 재검토(20~21년 결과, 사업규모 및 기간을 축소하고, 5년 후 성과를 평가하여 후속지원 여부 판단 결론)
 - 지원규모(국비 기준) : 60억원 → 20억원
 - 사업기간 : 계속 → 5년후 성과평가에 따라 재검토 / 5년차 이후 졸업제 검토 추진

- (추진근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7조의2 및 특구법 시행령 제12조의2

- **특구별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2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제목을 수립할 수 있다.

<참고 : 강소특구 사업 모델 개편 방향(안) >

- ▶ **(강소특구 사업 체계 완성)** 강소특구 지정 이후 자립까지 최대 10년간의 단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성장 경로를 마련
- ▶ **(성과 관리 강화)** 1단계 기반 조성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우수한 강소특구에 대해서만 2단계 특화 발전 지원 추진

예비 강소특구	강소특구 지원		자립형 강소특구
	1단계: 기반조성사업	2단계: 특화발전(5년)	
희망지역 대상 적정성 검토(6개월)	지역 공공기관 사업과 협력 네트워크 조성	특화 전략, 지역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제공	(중앙) 제도적 지원 (지자체) 자율성 육성
	※ 국비: 60:40-20:20-20여 지방비: 국비의40%	※ 국비: 20:20-20:20-20여 지방비: 국비의100%	※ 지방비·민간자본으로 운영 중앙은 필요시 투입할 지원

참고 5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통보 공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의
촉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통보

1. 관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특구별 성과평가)

나. 지역과학기술진흥과-1036('24.4.23., 강소특구 종합평가 실시 알림 및 특화발전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2. 강소특구육성 사업 지원 기간('20년 ~ '24년) 종료를 앞둔, 6개 강소특구에 대해 후속 특화 발전('25년 ~ '29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정 연도	강소 특구	종합 평가 결과 (향후 특화발전 지원 타당성)
2019	경기 안산	타당
2019	경남 김해	타당
2019	경남 진주	타당
2019	경남 창원	타당
2019	경북 포항	타당
2019	충북 청주	타당

3. 후속 특화발전 지원이 타당하다고 평가된 강소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연내 수립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한양대학교총장, 경상남도지사, 김해시장, 진주시장, 창원시장, 인제대학교총장, 경상국립대학교총장,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북대학교총장,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주무관

이남현

사무관

정꽃보라

지역과학기술 전결 2024. 6. 11.

진흥과장 고정호

협조자

시행 지역과학기술진흥과-129 (2024. 6. 11.)

접수 과학기술정책과-4277 (2024. 6. 13.)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6층 (여진동)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44-202-4749 팩스번호 061-202-6027 / tolate11@korea.kr / 비공개

생각은 창의적으로, 행정은 적극적으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8조(사업)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